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-013호

2026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

「석탄산업법」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에 계상된 2026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06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2026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

제1조(목적) 이 계획은 「석탄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대상, 지원내용·기준 및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)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 2026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 1과 같다. 다만,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단위사업별 예산 집행)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비는 별지 2, 근로자 자녀학자금은 별지 2-1, 폐광대책비는 별지 3, 일반광업육성지원 중 광산안전시설 사업비는 별지 4, 대체산업창업지원 사업비는 별지 5와 같이 집행한다.

제4조(지원제외대상) 다음 각 호의 지원제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업자 및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지원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관련되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2.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탄광
3.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 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
4.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

제5조(보칙) ① 지원대상인 석탄광업자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「광업법」 제83조에 따라 보고한 2026년도 광산물생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, 「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」, 「폐광대책비 지급기준」, 「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」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계획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1】

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

(단위 : 백만원)

단 위 사 업 명	2026년 예산	집행기관
가. 탄가안정대책보조	50,895	한국광해광업공단
나. 폐광대책비	59,606	
다. 일반광업육성지원 중 광산안전시설	13,357	
라. 대체산업창업지원	15,000	
마. 석탄비축자산구입비	1,257	
바. 석탄비축자산관리비	1,140	
사. 대한석탄공사 출자	28,650	대한석탄공사
합 계	169,905	

* 대한석탄공사 출자금은 대한석탄공사가 직접 수행
* 석탄비축자산구입비·관리비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
* 참고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계획은 강원도청에서 직접 수립·집행
 (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참고)

【별지 2】

탄가안정대책보조

구분	교부기준
지원대상	ㅇ 석탄 광업자 : 석탄생산원가와 고시가격 간의 차액, 산재보험료, 근로자 자녀학자금, 갱도굴진비, 생산감축에 따른 광업자대책비 ㅇ 연탄제조업자 : 연탄생산원가와 고시가격 간의 차액,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ㅇ 연탄운송업자 : 연탄수송비
지원내용 및 지원기준	ㅇ「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(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-14호 (2025.11.24.)) ㅇ「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」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74호(2024.4.19.))
지원절차	ㅇ 생산감축에 따른 광업자대책비 : 감축승인신청(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감축대상선정·승인(한국광해광업공단, 산업통상부) → 감축지원금 신청(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감축지원금 집행(한국광해광업공단) ㅇ 광업자대책비 외 석.연탄가격안정지원금 : 보조금 교부신청(석탄광업자·연탄제조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서류검토.실사 및 자금교부신청(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교부결정(산업통상부) → 자금수령 및 집행(한국광해광업공단) * 근로자 자녀학자금은 별지 2-1 참고

【별지 2-1】

근로자 자녀학자금

구분	교부기준
지원대상	ㅇ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고등학교(방송통신 고등학교 포함) 대학(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 포함)에 재학 중인 자녀 (단, 대학생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함) ① 학자금 신청 시 생산실적이 있는 탄광의 근로자(등기이사, 감사 및「상법」제401조의2제1항 해당 시 제외)로서 3개월간 평균 출근율이 60%이상인 자(단,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일로 인정) ② 업무상 재해(진폐)로 인한 사망자 ③ 업무상 재해(진폐증 포함)로 장해등급(7급 이상)을 판정받고 퇴직한 자 ④ 진폐로 인한 이직자로서 진폐 심사의사의 판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입원 및 통원 요양 중인 자 ㅇ 교부대상 자녀수 : 근로자 1인당 재학 중인 자녀 3인 이내
지원내용 및 지원기준	ㅇ 지원대상 중 ①은 재직기간, ②·③은 사망 또는 퇴직 후 3년간, ④는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중 자녀학자금 소요액 지원 * 연간 한도 : 고등학생 200만원, 대학생 1,000만원
지원절차	ㅇ 자녀학자금 신청(지원대상자 → 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실납입금 확인 후 학자금 소요액 지원(한국광해광업공단)

【별지 3】

폐광대책비

구분	교부기준
지원대상	○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석탄광산 광업권자 및 탄광근로자 : 폐광대책비 ○「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」에 따라 감축대상 선정·승인 받은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 : 감축지원금 ○ 인근 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방지 관리 주체(가행탄광 광업자) : 출수피해방지비
지원내용 및 지원기준	○「폐광대책비 지급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-89호(2025.6.13.)) ○「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」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-74호(2024.4.19.)) ○「석탄산업법」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
지원절차	○ 폐광대책비 : 폐광예비신청(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폐광대상탄광 심의·선정(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광업권 소멸후 폐광대책비 신청(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실사 및 폐광대책비 집행(한국광해광업공단) ○ 감축지원금 : 감축승인신청(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감축대상선정·승인(한국광해광업공단, 산업통상부) → 감축지원금 신청(석탄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실사 및 감축지원금 집행(한국광해광업공단) ○ 출수피해방지비 : 교부신청(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자금교부(산업통상부) 지원금 신청(가행탄광 광업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실사 및 사업비 집행(한국광해광업공단)

【별지 4】

일반광업육성지원 중 광산안전시설

구분	교부기준
지원대상	ㅇ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또는 가행 중인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: 광산안전시설·장비구입비 ① 전년도 6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②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 ㅇ 한국광해광업공단 : 안전관리지원비, 광산 지원용 장비, 광산안전교육관 신축비 ㅇ 국내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, 광산안전관리직원, 광산근로자 : 광산안전교육비 ㅇ 국내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: 작업환경측정비,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 구축비, 위험성평가 컨설팅비, 광산안전진단비 ㅇ 한국광업협회 :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 위탁사업비
지원내용 및 지원기준	ㅇ 광산안전시설·장비구입비(총 비용의 60~80% 이내) ① 갱내 통신장비, 긴급 대피시설, 끼임, 충돌 및 추락 방지시설,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 소프트웨어(80% 이내) ② 작업환경개선시설 및 장비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 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공동활용장비(70% 이내) ③ 기타시설(60% 이내) ㅇ 광산안전교육, 광산안전도 전자도면화(80% 이내) ㅇ 광산안전진단, 작업환경측정, 위험성평가컨설팅(80% 이내) ㅇ 안전관리지원비 : 광산안전위원회 운영비 등(100% 이내) ㅇ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지원용 장비(100% 이내) ㅇ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업무 위탁사업비(100% 이내)
지원절차	ㅇ 지원금 신청(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광산안전시설 계획서 검토(한국광해광업공단→광산안전사무소 검토의견서 작성) → 지원대상 선정(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교부결정(산업통상부) → 사업관리·감독(산업통상부, 한국광해광업공단)

【별지 5】

대체산업창업지원

구분	교부기준
지원대상	ㅇ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대체산업의 창업·이전·확장기업 -「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」 제2조
지원내용 및 지원기준	ㅇ 시설자금 :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, 구조물, 구축물, 시설, 장비 등 자산의 구입·설치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금 - 5년거치 5년상환, 소요자금의 80% 이내, 변동금리 (단, 건물·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) ㅇ 운전자금 :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(연구개발비 포함) - 2년거치 3년상환, 전년도 매출액의 1/4 이내, 변동금리
지원절차	ㅇ 융자신청서 접수(기업(도지사의 대체산업융자지원대상자 추천서 첨부) → 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융자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한국광해광업공단) → 융자 집행(대리대출 은행)